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커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4. 9(수) 10:00

제254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682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5. 3. 28.
- 라. 회부일자 : 2025. 3. 28.

2. 제안이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얻고자 함.

3.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총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최종예산 776,986,391천원(일반 8,070,788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B)	기정액			1회추경 (안) (B)	비고
			소계(A)	당초예산	간주처리		
계		776,986,391	768,915,603	764,927,053	3,988,550	8,070,788	
일반회계		754,545,611	746,474,823	743,148,273	3,326,550	8,070,788	
특별회계		22,440,780	22,440,780	21,778,780	662,000	-	
	의료급여기금	634,164	634,164	634,164	-	-	
	주차장	21,806,616	21,806,616	21,144,616	662,000	-	

4. 푸른미래도시국 추경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1회추경(안)	증감율 (%)	
푸른미래도시국		17,961,805	17,669,805	292,000	1.65 %	
주	택	과	980,037	980,037	0	0.00 %
도	시	계	689,997	689,997	0	0.00 %
주	거	정	1,060,697	1,060,697	0	0.00 %
공	원	녹	14,803,667	14,533,667	270,000	1.86 %
지	과					
건	축	과	427,407	405,407	22,000	5.43 %

5. 부서별 주요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주요내용	최종예산 (①+②)	기정액 (①)	1회추경(안) (②)
공원녹지과				
남서울 희망의 숲 조성	남서울희망의 숲 조성 관련 기본계획 용역비, 지적측량수수료	270,000	0	270,000
건축과				
제3종시설물 (D등급) 정밀안전점검	2024. 12. 정밀안전점검 결과 신규 지정 1개소에 따른 정밀안전 점검 용역비	44,000	22,000	22,000

6. 검토 의견

가. 푸른미래도시국은 기정예산(176억 6,980만원)에서
금회 2억 9,200만원이 증액된 179억 6,180만원이며,
구 전체 예산 총액 대비 2.31%에 해당됨.

나.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1) 공원녹지과

기정예산(145억 3,366만원)에서 금회 2억 7,000만원 증액

주요 편성내용으로

남서울희망의 숲 조성 관련 기본 계획 용역비 등 2억 7,000만원 증액

2) 건축과

제3종시설물 정밀 안전점검 용역 2,200만원 증액

다. 검토의견

추가경정예산은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 과감히 삭감하고 긴급한 재정 수요가 발생했을 때 편성하여 사업의 즉시성을 기대하는 것으로 볼 때 남서울희망의 숲 조성 사업은 주민의 산림 문화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으로 충분한 사업 설명 및 사전 의회 동의를 필요하다 판단되며 추경안으로의 편성 적절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봄.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8.4.]